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중소기업 ·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안정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편집자주]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도급자 보호 강화

### 1 하도급자 보호 위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원·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 사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하수급자) 불이익 가중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b>30억이상 시설공사로 확대</b> (현행 50억 이상)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미이행으로 통보된 자는 감점 적용 규정 신설

### 2 하도급관리계획에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계획 평가기준 마련

현 행	개 정
원도급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및 부당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하수급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필요	<b>적격심사</b> 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대상 확대(50억이상→30억 이상), <b>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강화(5점 배점)</b>

###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확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정

현 행	개 정
30억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확대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계획 평가항목의 배점 필요	3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b>경영상태 평가 항목 배점 조정(15점→10점)</b>

##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1 10억 미만 공사의 여성기업 우대 및 중소기업 입찰참여 확대

현 행	개 정
여성기업의 토목·건축공사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 경영 상태 점수에 10% 가산평가하나 실질적인 혜택 미약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모든 공사에 신인도 신설,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한 중소기업체)에게 <b>가산점 부여(1점)</b>

② 5억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의 접근성평가 도입

현 행	개 정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함으로써 공사 품질 저하 우려	<b>접근성(가산점 0.5점)</b>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방지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정확성 제고

① 신인도 평가자료 제출근거 명확화

현 행	개 정
신인도 평가서류 제출근거 불명확으로 확인 및 평가 애로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 발행 확인서로 제출 및 평가 가능



한국냉동공조협회,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로 명칭 변경

< Korea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Industry Association >



지난 6월 18일 개최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현판식

한국냉동공조협회(회장 노환용)는 지난 2월 정기 총회에서 협회 명칭을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로 변경한 후 법인명 등기 및 로고제작 등 모든 후속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6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노환용 회장은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회원사 기술발전, 인력양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